

- 1) 기획처장이 제11기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,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임시의장이 제11기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을 진행해야 함을 설명하다.
- 2) 최 의원이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는 방안을 건의하다.
- 3) 이 의원이 대학평의원회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보직을 맡은 본인은 의장직을 맡지 않기로 함에 따라, 임시 의장직에 자천하고 의장 선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다.
- 4) 참석의원 전원의 동의로 이 의원이 제11기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 절차를 시작하다.

나. 회의개회

- 1) 임시의장이 재적의원 12인 중 11인의 참석으로 회의 성원 조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2026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.

다. 안전심의

- 1) 임시의장은 제1호 의안인 “제11기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”을 안건으로 상정하고, 「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」 제8조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호선으로 선출해야 하며,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선출되는 즉시 의장이 후속 회의 진행을 맡게 됨을 설명한 뒤, 참석의원들에게 후보 추천을 요청하다.
- 2) 이 의원이 의장의 경우 교원 내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건의하다.
- 3) 임시의장이 그동안의 관례를 설명하고, 교원 평의원 중 다득표자이자 오래 재직 한 심 의원을 추천하다.
- 4) 임시의장이 의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추천이 없음을 확인하고, 참석의원 전원의 동의로 심 의원이 제11기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음

- 을 선포하다.
- 5) 심 . . . 의원이 의장직을 수락하다.
 - 6) 의장이 부의장 선출을 위한 관례에 관해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 - 7) 기획처장이 「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」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부의장은 의장과 구성단위를 달리하여 선출해야 하며, 그동안의 부의장 구성 단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.
 - 8) 이 . . . 의원이 동문(복 . . .) 평의원을 추천하다.
 - 9) 복 . . . 의원이 직원 평의원을 추천하다.
 - 10) 이 . . . 의원이 직원(이 . . .) 평의원을 재청하다.
 - 11)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추천이 없음을 확인하고, 참석의원 전원의 동의로 이 . . . 의원이 제11기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하다.
 - 12) 이 . . . 의원이 부의장직을 수락하다.
 - 13) 의장과 부의장의 당선 인사를 간단히 진행하다.
 - 14) 의장은 제2호 의안인 “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(안) 심의”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 - 15) 기획처장이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“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(안) 심의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.
 - 16) 이 . . . 의원이 주어가 중복되어, 후에 기술된 주어는 삭제하는 방안을 건의하다.(‘추천위원회 추천’ ⇨ ‘추천’)
 - 17) 의장이 「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」 제13조의 2에 인용된 규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추천에 관한 내용인지, 추천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다.
 - 18) 기획처장이 법인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또는 추천감사 추천을 의뢰하는 내용이라고 답변하다.
 - 19) 전 . . . 의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질의하다.

- 20) 기획처장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(법인, 대학평의원회, 각급학교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함)에 대해 설명하다.
- 21) 의장이 제2호 의안인 “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(안) 심의”에 대하여 주어 중복 삭제 건 외 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.
- 22) 의장은 제3호 의안인 “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”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- 23) 기획처장이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“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.
- 24) 이 의원이 대학원을 일반대학원으로 특정하면, 타 특수목적 대학원의 명칭도 변경되는지 질의하다.
- 25) 기획처장이 특수대학원, 전문대학원은 별도로 기술되어 있음을 답변하다.
- 26) 이 의원이 연구등록 기간 중 등록금에 대해 질의하다.
- 27) 기획처장이 석사과정은 등록금의 5%, 박사과정은 10%라고 답변하다.
- 28) 연 의원이 타 대학의 (연구등록 기간 중 등록금) 수준에 대해 질의하다.
- 29) 기획처장이 타 대학의 경우 우리 대학에 비해 (연구등록 기간 중) 등록금 수준이 높고 기간도 긴 편이라고 답변하다.
- 30) 최 의원이 박사과정 수료자가 최소 2학기의 의무 연구등록 기간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질의하다.
- 31) 의장이 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에 명시되어 있음을 말하다.
- 32) 의장이 대학원의 일반대학원 명칭 변경에 따라 대학원 학칙 내 별표1, 별표3의 명칭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하다.
- 33) 기획처장이 「규정류 관리규정」에 따라 경미한 수정사항으로 일괄 개정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답변하다.
- 34) 의장이 제3호 의안인 “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”에 대하여 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.

- 35) 의장은 제4호 의안인 “대학 학칙 개정(안) 심의(교무처 학사운영팀)”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- 36) 기획처장이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“대학 학칙 개정(안) 심의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.
- 37) 의장이 집중이수제 관련 상위 규정이 이전부터 마련되어 있었고, 대학원은 반영되어 있었으나, 학부 학칙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을 이번에 반영하는 건임을 말하다.
- 38) 의장이 제4호 의안인 “대학 학칙 개정(안) 심의(교무처 학사운영팀)”에 대하여 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.
- 39) 의장은 제5호 의안인 “대학 학칙 개정(안) 심의(기획처 기획평가팀)”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- 40) 기획처장이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“대학 학칙 개정(안) 심의(기획처 기획평가팀)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.
- 41) 연 의원이 바이오식품공학과와 첨단학과 미승인으로 인해 일반 학과로 원복되는 과정에서 15명분의 정원이 해당 학과가 아닌, 창의융합학부 첨단분야계열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다.
- 42) 이 의원이 2026학년도 바이오식품공학과 원래 정원이 26명이었으며, 2027학년도 바이오헬스융합학부(첨단학과)와의 통합 과정에서 예체능 계열에서 받은 정원 15명을 더 추가하는 방안이었음을 답변하다.
- 43) 기획처장이 2026학년도 입학정원표를 근거로 부연 설명하다.
- 44) 의장이 제5호 의안인 “대학 학칙 개정(안) 심의(기획처 기획평가팀)”에 대하여 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.
- 45) 의장은 제6호 의안인 “2025학년도 결산(안) 자문”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관부서인 재무회계팀에 설명을 요청하다.
- 46) 재무회계팀장이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“2025학년도 결산(안) 자문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.

- 47) 홍 · 의원이 선급금 또한 순액방식으로 산출한 것인지 질의하다.
- 48) 재무회계팀장이 맞다고 답변하다.
- 49) 홍 · 의원이 '등록금및수강료수입'의 증가는 학생 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인지 질의하다.
- 50) 재무회계팀장이 등록금 인상이 주된 요인이라고 답변하다.
- 51) 의장이 제6호 의안인 "2025학년도 결산(안) 자문"에 대하여 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.
- 52) 의장은 기타 토의 사항에 대해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- 53) 기획처장이 회의록 전자 결제, 위촉장 수여 등에 관해 설명하다.

라. 폐회선언

- 1) 의장은 더 이상 토의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11:20에 폐회를 선언하다.

7. 회의록 서명

- 이상과 같이 회의 전말의 기록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하다.

2026. 5. 19.

작성 : 이 

확인 : 

